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4차 산업혁명, 미래 부대구조 개편 등 급변하는 전문인력 소요에 각군 및 해병대가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, 같은 계급 정원 내 군무원 직군·직렬 조정 권한을 6급 이하에서 전 계급으로 위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군조직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중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

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단서 중 “6급 이하”를 “각군 및 해병대에 속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) ③ 일반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·직렬 조정 및 같은 계급 (상당 계급을 포함한다) 간 정원의 상호 조정은 합동참모의장, 각군 참모총장, 해병대사령관,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승인하여 정한다. 다만, <u>6급 이하</u> 일반 군무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· 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다.	제7조(정원 및 기구의 조정 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군 및 해병대에 속</u> <u>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실	
연 락 처	(02) 748 - 6554